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4.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13	황명선의원	2024. 7. 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6.)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2. 26.)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4. 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2202715	권향엽의원	2024. 8. 1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6.) 상정, 축조심사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2. 26.)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4. 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3		2204387	박성민의원	2024. 9. 27.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6.)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2. 26.)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4. 8.)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8.)

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9.)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사무원·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는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사용자가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 제3항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기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u> <u>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u> <u>로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u> <u>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u> <u>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u> <u>사업소에서 자기가 직접 충전</u> <u>할 수 있다.</u>